

~~I CONFIDENTIAL~~

제 7차 한일 전면 학답 법적 자위 위원회

제 25차 회의록

1. 일시: 1965. 4. 21. 14:30 - 15:40

2. 장소: 외무성 233호실

| | |
|---------------|---------------|
| 3. 참석자: 한국측 - | 왕 회 대표 |
| | 이경호 " |
| | 안상훈 보좌 |
| | 김윤태 사무관 |
| 일본측 - | 야기 입관국장 |
| | 니이 야 민사국장 |
| | 오도와타 조부국 참사관 |
| |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고장 |
| |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
| | 다니구지 조약과 사무관 |
| | 사히끼 법무과 사무관 |
| | 쓰루타 북동 아과 사무관 |

4. 회의 내용:

야기: 협정 문안을 오늘 제출하려 했으나 준비가 되지 않아 내주에 제출 하여 하니, 오늘은 이미 연락한 바대로 "체우"에 대하여 논의하자.

왕대표: 거듭 오늘 회의에서 이야기 해들 것은 협의 사항에 의거 협정문안을 작성함에 있어 협정 본문에 관련해서 협의 의사록에 규정될 것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문제점을 전부 협의 의사록에 규정할 수 없으니,

~~I CONFIDENTIAL~~

1229

1597



사건으로서는 한일 공동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 합정 세종에 있어서 문제되는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후 입국자 및 이산 가족의 재회 문제로 어떤 형태로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쳐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나온 외에 더 내용을 더 이야기 해달라.

야기: 법적 지위 중 쳐우 문제가 제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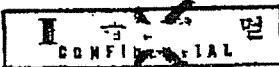
방대표: 쳐우 중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일축한 내용이 의무 교육을 밟을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상급 학교 진학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 부여만을 확약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로서는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상급 학교 진학 자격 부여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축은 이에 넓답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교육 문제 외에도 사회 보장 제도에 있어서 그 보장을 확약할 것인가 있을지?

이태프: 솔직히 말해서 사회 보장 제도 중 국민 건강 보험은 대다수의 저항에서 제일 반대에 적용하고 있고, 또 가조 이후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보아도 일반 여론이 그 적용을 저지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국민 건강 보험의 적용에 대하여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또 한 교육 문제 중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진학 자격 부여도 재고해 보기를 바란다.

야기: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진학 자격 부여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스루파: 자민당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다고 한다.

방대표: 가조 이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외부 내에 외국인의 학교 제도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보도된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1593

1230

~~CONFIDENTIAL~~

쓰루다: 어딘가거나 신문 보도로 전화한 이야기는 아니며, 설치에 이르지
못하였다.

야기: 일차 문부성 실무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다.

이대표: 과거에 문부성 실무자 이야기는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진학 자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일본의 교육 체계를 물한시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다.

조종련에서 경영하는 학교와 같이, 민족 교육이란 하여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영웅 숭배 사상이나, 세계 적화를 위한 사상 교육이나 하고 있는 학교를
왜 그냥 두는가? 이해 못하겠다. 이에 반하여 우리 민단계 학교는 교육
과정이 일본의 학교와 달리 갈으니 고백해 볼 여지가 있다.

쓰루다: 조종련계 학교를 단속하는 것은 법률상 곤란한 점이 있다.

방대표: 종전후 조종련이 민단계와 공산계로 분리될 때 한인계 학교가 대개 조종련
으로 관입이 있었다 한다.

조종련계의 민족 교육 문제에도 일본측서 예산을 뒷받침 해주는가?

야기: 특수한 지역에 조종련계 한인들이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에 본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지방 자체 단체의 관할구역내이므로 예산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하여간 문부성 실무자를 출석시켜 확실한 견해를 들도록 하자.

방대표: 교육 문제로 인하여 우리 대표단이 민단측으로 부터 많은 질문을 당하고
있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확답을 할 수 없으니, 권고문도 출석
시켜, 민단 입장에서의 견해도 듣게 하자.

나이야: 재일 한인이 설립한 학교를 일본의 정식 학교로서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가?

123

~~CONFIDENTIAL~~

1593



이대표: 우리측은 종래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의 정식 학교인가 문제를 철회하고, 그 학교의 졸업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등록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등등한 진학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으로 바꾸 것이다.

쓰루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고사반 회상 회답에서 한국측이 내놓은 문제 3개중 2개가 합의된 점인데, 여타의 "학교 설립인가" 문제는 철회하는 건 인지? 이제부터의 논의는 과반 합의 사항에만 기초할건인가?

이대표: 그렇지 않다. 제3항목에 대하여는 보류했을 뿐이다. 즉 일본측이 교육 문제와 사회 보장 문제에 있어서 일본인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면 틀림도 그렇지 않다면 철회한건은 아니다.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진학 부여 문제는 앞으로 상상방이 더 논의해야 할건이다.

야기: 오전에 토의의 과정에서 해결하자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니, 다음에 논의해 보자. 재산 반출 문제는 교육 문제의 토의후로 돌려도 될건 아닌가?

이대표: 교육 문제를 토의한후에 재산 반출 문제를 논의해도 좋다.

가조인된 것 중에도 세트히 규정할건이 많고, 영주권만 해도 합의 의사록에 넣을건이 많다. 그런데 회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 "처우" 문제의 토의와 별도로, 협정문 작성을 추진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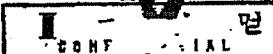
야기: 협정문안 작성은 어떻게 전전되고 있는지?

오쓰화다: 협정문안을 작성해보니 여러가지 어려운 바가 많다.

합의된 것도 표현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여 언제 계약을 한다가는 곤란하다. 특히 처우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더욱 그렇다. 재산 반출이나 교육 문제의 근본 취지는 협정에 규정 해야겠다.

1232

1600



~~비밀~~
CONFIDENTIAL

이대표: 채우 문제의 기본이 되는 점을 협정 본문에 규정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4. 3월 가조인된 추가된 합의사항 1의 "탁당한 고역"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조문화하는 것이다.

오오와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탁당한 고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정 본문에 표시할 것인가? 골반하여, 우리로서는 한국족의
의향을 듣고자 한 것이다.

이대표: 교육, 사회 보장, 재산 반출 등의 구체적인 채우가 결정된 후, 그것이
적절한지 탁당한지를 보아서 협정 본문의 표현을 조작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는 탁당한 고역"은 윤을 내용이 없는 표현이다.

야기: 지금 형편으로 협정문을 제출하기는 곤란한지?

오오와다: 조약 전체의 균형으로 보아 곤란하다.

이대표: 채우의 논의가 끝나야 다른 문제로 조문화 할 것인가?

오오와다: 그렇지 않다. 대체적으로 나마 논의된 다음이라야 협정 본문과
합의 의사록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대표: 채우 문제의 토의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협정문을 작성한다면
시일이 천연될 것이다. 채우 문제의 토의와 협정문의 작성 작업은 병행
시켜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협정 본문과 합의 의사록은 분리하여
토의 할 것이다. 동시에 토의 해야 할 것이다.

야기: 과반 가조인된 오강안에 의거하여 협정문만을 작성할 것 아닌가?

오오와다: 물론이다. 그러나 협정문만 작성에 앞서 일자 "탁당한 고역"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이대표: 우리 는 채우에 있어 생활 보호는 이미 합의 되었으니, ... "등"에
관하여 먼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비밀~~
CONFIDENTIAL
1233

1601

~~CONFIDENTIAL~~

그러나 영주권의 부여법이나 되기 강제 같은 것은 내용도 실질적으로 확정되었으니, 조문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척우 문제는 실질적으로 결정 안 되었으므로 아직 조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야기: 조약으로서는 하조인된 부분 중 합의 사항은 그대로 조문화 하고, 추가된 합의 사항은 조문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토양인데, 실질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조문화 할 수 없다는 한국측 의향은 어떻게 보는지?

이대표: 표현에 있어 "타당한 고려"가 아니어도 "적절한 고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이고, 혹은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척우 문제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결정된 후 조문화해야 할 것이다.

마니구찌: 이미 학의를 본 영주권과 되기 강제로 영문으로 표현함에 곤란하니, 척우 문제는 실질적으로 결정이 선정되어야 조문화 할 것이다.

이대표: 영주권이나 되기 강제에 대하여 조문화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척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자. 척우는 대체 몇 회 정도 논의하면 어떻겠느냐?

나이야: 외무장관이 좀 더 노력하여 가능한 한 척우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 되도록 하여 같이 조문화 작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대표: 척우가 결정되어야 여타 문제도 조문화 한다는 것은 곤란한 이야기다.

오으와다: 한국측 생각대로 학의를 병행해도 될 것이다.

이대표: 척우 문제 해결과 협정문 조문화 작업은 일정 행정 개회 때도록 하자.

야기: 다음에는 본부성 실무자를 참석시키자.

나이야: 한국측이 말하는 한국 학원 졸업자에 대한 등등한 자격 인정은 한국내의 정규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인가? 한국내 각종 학교 졸업자와 등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인가?

~~CONFIDENTIAL~~

1602

~~비밀~~ CONFIDENTIAL

이대표: 삼급 학교 전학 차액에 있어서 외국 학교 즐얼 차와 동등한 차액을 인정하라는 허지 이프로 한국내의 정규 학교 즐얼차와 동등한 전학 차액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일본내에 있는 한국계 학교는 일본의 문교 학제되니 당연한 요구라 생각한다.

다음에는 문부성측 이야기를 듣는 한편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하여 후생성측 이야기도 들으면 어떨까?

오오와다: 그것도 좋다. 한국측 요망이 어떤 것인가? 먼저 들어야 하겠다.

이대표: 우선 국민 건강 보험만에 한하여 상호 논의 하자는 것이다.

스스루다: 후생성측은 한국측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고정되어야 이에 따라 논의 하겠다는 것이다.

이대표: 당초 우리 는 사회 보장 전부를 적용도록 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어느 정도 품었고, 더욱 국민 건강 보험 하나라도 그 적용을 보장 받는다면 땐건에 대하여는 이해하기 풀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풀 수 있다.

야기: 그역나 문부성과 후생성 양측 실무자가 다 함께 출석하기는 어렵다.

오오와다: 문부성 측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모양이나 문부성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자.

사이끼: 한국측이 처음에 대해서 요망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대표: 과방 외상 회답 기간중 갑대사 무시 바 실의관 회답에서 아족이 열개해서 내놓은 안이 그것이다. 당시 "아나기야" 사무관이 통안이 최종적이나? 본기애 그건만 적용된다면 땐건은 철회한다고 그치지 이야기 한바 있다. 처음은 일족이 고역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서 우비가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235

~~비밀~~ CONFIDENTIAL

1603



사이끼: 상호 마찬 가지다.

오호와다: 재산 만들 및 송금에 대하여는 대장성과 나종에 논의하도록 하자.

이대표: 우선 문부성과 총성과 이야기 한후 대장성과 논의하도록 하자.

오호와다: 회의의 축진을 위하여 조본작성 작업을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
으로 방안을 정하자.

이대표: 켜우를 실질적으로 끝마친후 조본화 작업을 하는 건은 늦어지니
양쪽이 안을 서로 내거나, 일쪽이 안을 내면 이에 기초하여 논의 수정
해도 될 것이다.

야기: 곧주에 협정 문안이 준비 되겠느냐? 안되면 내주에 1회 가량 켜우에 대하여
여 논의 하자.

이대표: 다음 회의를 보태 23일 짧 하자.

야기: 4. 23.(금) 14:30에 하자.

쓰루다: 일송 회답 일자를 정하고 문부성과 타협하여 협약하겠다.

쓰루다: 친문 발표는?

이대표: 켜우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하자.

야기: 좋다.

1236



1604